

2022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7.

인 천 광 역 시 장

■ 중소기업육성자금(1조 400억원)

사업명	지원규모	협약기관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	1조 원	-	은행협조 용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9,100억원	16개 협약은행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5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협약보증 지원	400억원	기술보증기금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구조고도화자금	4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기계·공장확보자금	370억원	市금고, 전대약정체결은행	I 그룹(기준대출금리, 변동)
벤처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 市금고 전대약정체결은행	II그룹(기준대출금리-0.5%p, 변동)
재해기업자금	30억원	市금고, 전대약정체결은행	IV그룹(무이자용자, 고정)

구조고도화 자금

IV. 기금용자(400억원)

1. 지원개요

지원 규모	구분	지 원 사 업		업체당 용자한도	용 자 기 간		대출금리
370억원	기계 구입 자금 (업체당 30억원이 내)	기 본	일반	10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대출 금리 (I)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우 대	스마트공장도입	30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9%p (V)	
		연계운전자금 (최대4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공장 확보 자금 (업체당 35억원이 내)	공장확보 (업체당 30억원이 내)	공장	30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대출 금리 (I)
		연구소	10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주차장확보 (업체당 5억원이 내)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5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벤처창업자 금 (업체당 7억원 이내)	기계구입자금		7억 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5%p (II)	
	운전자금		3억 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30억원	재해 자금	재해기업		2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무이자 (IV)

2. 대출금리

구분	지원자금	대출금리	'22년 1분기 대출금리
I 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	2.3%
II 그룹	벤처창업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5%p	1.8%
IV 그룹	재해기업자금 (고정)	무이자	-
V 그룹	특별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9%p	1.4%

※ 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단, 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금리는 0.8%로 적용함(IV그룹 무이자 제외)

3. 기타조건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대출은행 :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

※ 市 금고인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4.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 17. ~ 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금담당 ☎(032)0621~0624

2 벤처창업 자금

① 지원목적

-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술기업의 창업기반을 조성

② 지원규모 : 기계공장확보자금 지원한도 370억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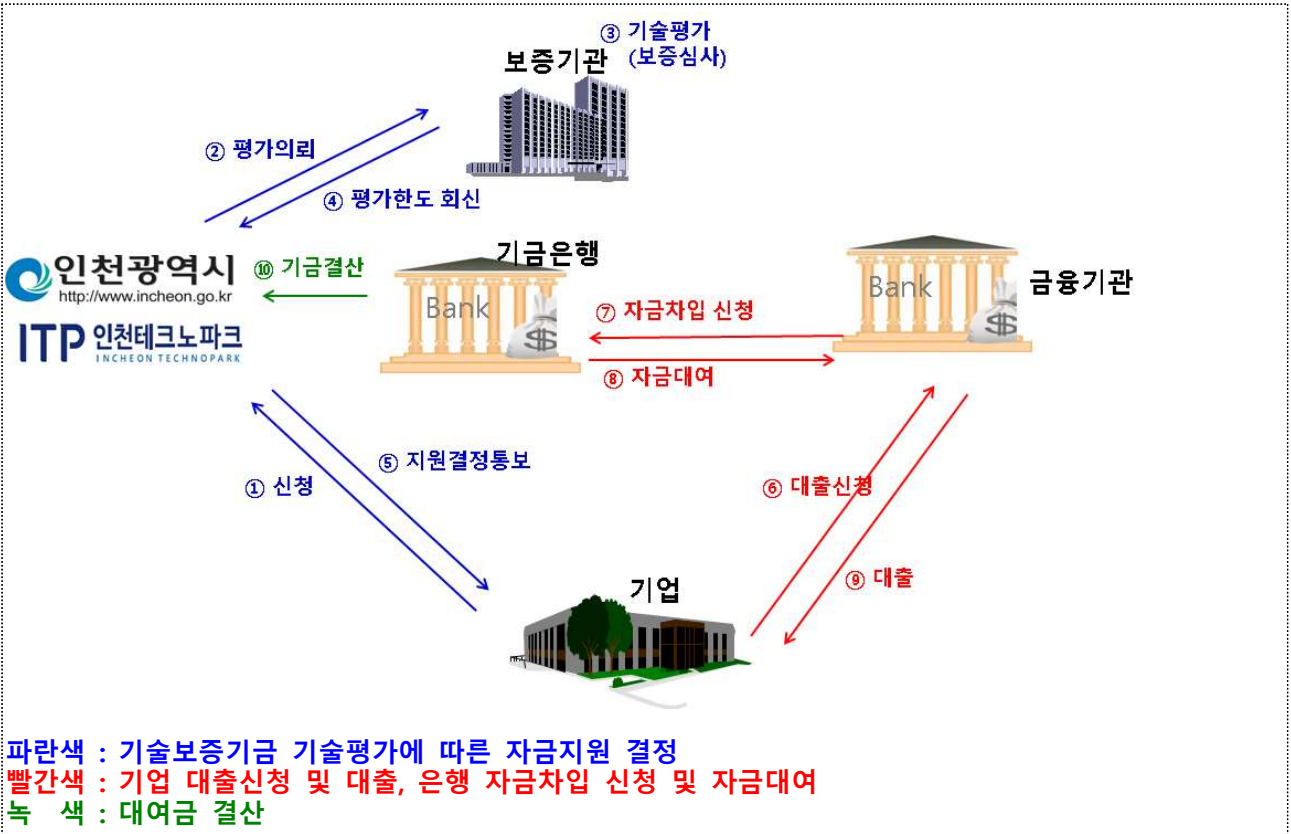
③ 지원대상 :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7년 이내로 벤처기업(벤처예정기업 포함)이거나 이노비즈 기업 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창업 3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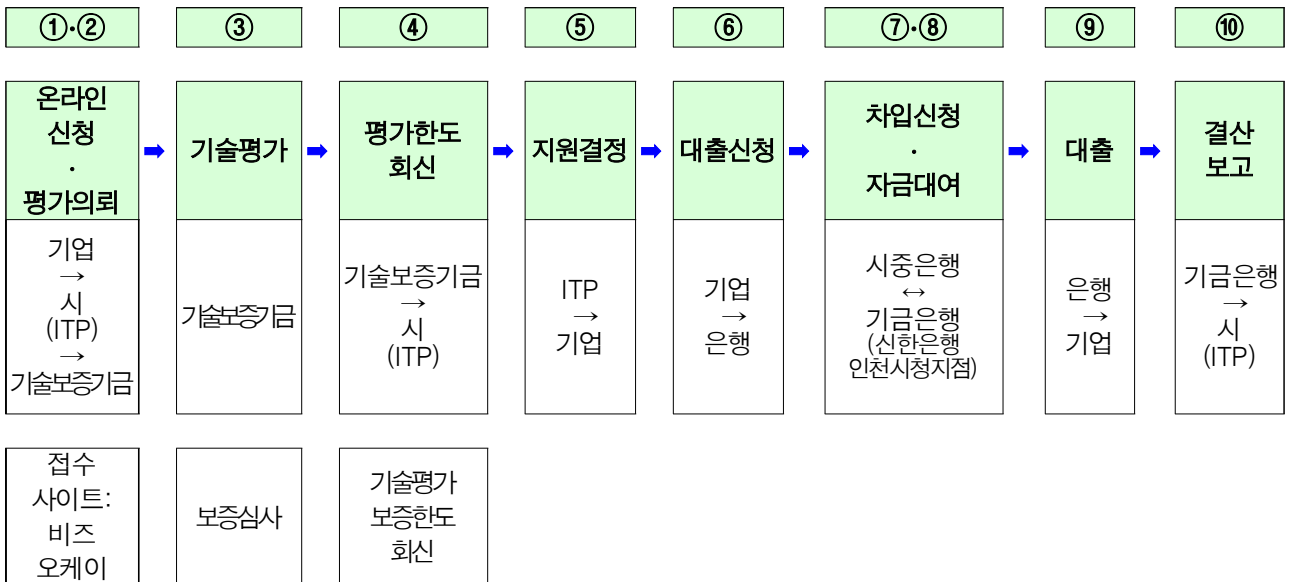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및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및 벤처창업자금 합산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4 지원체계



5 업무절차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먼저 끝낸 후 ITP 에 추천 가능

※ 추천 프로세스 : 자금접수(기업⇒기보(평가진행)) → 대상추천(기보⇒ITP) → 지원결정(ITP⇒기업)

6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업체당 7억원 한도 이내
- 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 이내
- 기계/공장/벤처창업자금 지원잔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지원총액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금액과 별개로 운전자금 단독지원 가능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시설자금 변동사항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불가 : 신청시 확정된 지원시설(기계, 시설)의 타시설 대체 불가 · 변경가능 : 규격, 제조업체, 수량 등의 경미한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시설의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 - 은행이관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은 대출기간이 장기(8년)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 기술평가 의뢰 (ITP → 기술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에서 회신하는 보증한도로 지원결정함

7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비 고
공 통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창업보육시설 입주확인서 등 ※ 벤처예정기업, 기술평가 B등급 이상기업(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업종증빙서류 생략 가능
	신 청 서	온라인신청
	사 업 계 획 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소정양식
	지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시설구입 (추가)	구입시설 견적서 등	견적서 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달로그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별표2]

<기금 원금상환 유예제도>

구분	내용
상환유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업체
상환유예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해, 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미회수, 납품업체부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계약수주로 원부자재구입을 위해 자금이 크게 소요되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시설·설비투자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市 승인절차 필요)
상환유예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시 분할상환 4회차분까지 유예신청가능) -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만기연장 불가, 대출금 만기일 범위 이내)
상환유예 처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검토요청(업체→ITP) ⇒ 사유검토 내부결재 또는 시 검토요청(ITP) ⇒ 상환유예신청서 제출(업체→ITP) ⇒ 승인공문발송(ITP→업체·은행) 1) 상환유예신청서 제출 전에 업체에서는 사유 증빙서류와 함께 ITP에 공문으로 유예 검토요청 (은행 및 보증기관 사전확인 필수) 2) 상환유예 인정범위일 경우 유예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 해당업체에 신청서 제출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상환유예 인정사유가 아닐 경우 인천시 승인을 거쳐 처리 3) 상환유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을 업체에서 작성, 은행확인도장 날인, 날인된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같이 원본제출 4) 상환유예 신청서 접수 및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 승인공문 발송